

[06]월 보건관리 상태보고서- 간호사

사업장명: (주)유진정공

1. 보건관리상태

사업자 현황	☐ 광업 ☒ 제조업 ☐ 건설업 ☐ 비제조업				
	업종분류: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				
근로자현황	총 근로자수 : 83명			입사자수	퇴사자수
전 월	83명	사무직: 남 2명/여 1명	생산직: 남 74명/여 6명	0명	0명
당 월	83명	사무직: 남 2명 / 여 1명	생산직: 남 74명 / 여 6명	0명	0명
산업재해 발생현황	총 재해자수	사망자수	부상자수	업무상질병 재해	재해율(%)
전 월	1명	0명	1명	0명	1.2
당 월	0명	0명	0명	0명	0
연누적현황	1명	0명	1명	0명	1.2

2. 업무수행내용

◎ 사업장 관리

업무수행내용	점검결과 (보건관리상태)			지도내용(개선 의견)
	양호	미흡	미해당	
안전·보건체제 관리	○			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및 교육이수 확인
산업안전·보건위원회			○	

◎ 작업환경 관리

업무수행내용	점검결과 (보건관리상태)			지도내용(개선 의견)
	양호	미흡	미해당	
작업환경측정 관리	○			특수검진 해당공정: 프레스, 스폿용접, CO2용접

◎ 건강관리

업무수행내용	점검결과 (보건관리상태)			지도내용(개선 의견)
	양호	미흡	미해당	
건강진단 관리	○			(일/특) 2022.10.25 실시 확인 / 하나메디칼 (DN:2) (일/특) 2023.10 실시 예정 / 하나메디칼

3. 종합의견 위탁업무수행(총괄)(세부업무내용 및 개선의견)

■ 둔포공장 방문함

1) 현장순회 실시

- 전 공정 현장순회 실시

→ 보호구: 귀마개, 안전모, 안전화, 방진마스크 지급중이며 지급대장 작성 확인하였습니다.

- 스낵용접

→ 귀마개 착용 일부 양호합니다. 방진마스크 착용 미흡합니다. 착용 안내바랍니다.

→ 귀마개, 안전모, 방진마스크 안전보건표지 부착 미흡합니다.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바랍니다.

→ 실러, 용접팁 MSDS 비치 확인했습니다. 구조용 접착제 MSDS 비치 바랍니다.

① 실러 MSDS 확인 결과 구성성분으로 산화아연 포함되어 있습니다. 12개월 주기로 특수건강검진, 6개월 주기로 작업환경측정 실시해야 합니다.

→ 근로자들이 지그(5kg 이상)를 들고 나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 부착해야 합니다.

- CO2용접

→ 당일 작업하는 근로자가 없어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불가능합니다. 근로자들에게 귀마개 및 방진마스크 지속적으로 착용 안내바랍니다.

→ 귀마개, 안전모, 방진마스크 안전보건표지 부착 미흡합니다.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바랍니다.

→ MSDS 비치 미흡합니다.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MSDS 모두 게시 바랍니다.

- 지게차

→ 총 4대 보유중이며 근로자가 직접 경유를 부어 충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.

→ 경유 MSDS 확보 및 게시바라며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바랍니다.

→ 근로자 안전모 착용 미흡합니다. 지속적으로 착용 안내바랍니다.

2) 건강정보 자료보급

- 여름철 질환(JS산업보건연구소)

-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/ 폭염대비 건강수칙 리플릿(질병관리청)

- 2023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(질병관리청)

- 2023년 안전의식수준향상프로그램 리플릿(고용노동부/안전보건공단)

- 벌목 작업중 사망사고 연속 발생 / 설비·기계 유지보수중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연속발생(안전보건공단)

- 산업현장 위험성평가, 이렇게 하세요!(고용노동부/안전보건공단)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(상태보고서별지)

3)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지도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확인

→ 선임 확인 : 임경환 공장장, 김세훈 부장

→ 선임 서류는 보존하여야 함을 안내 : 보존 확인 / 2022.06 신규교육 이수 확인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실시 지도

→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에 의거하여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→ 신규교육: 대상자 선임 직후 3개월 이내 / 6시간 이상

보수교육: 신규 교육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3개월 / 6시간 이상

→ 교육방법: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,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, 총 교육시간의 3분 2범위 이상을 집체/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.

(고시 제2023-10호, 안전보건교육규정)

4)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도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함을 안내함.

→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확인사항

→ 안전보건경영방침: 현장에 게시 확인하였습니다.

-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)에 따라 각 항목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.

→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(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)

→ 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, 개선방안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(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대체 가능)

→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매뉴얼을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

→ 확인사항: 매달 위험요인 파악 후 개선대책 작성 중입니다.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 및 교육바랍니다.

근로자 의견 듣는 절차,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 매뉴얼 상반기 내로 게시바랍니다

5) 위험성평가 개정사항 안내

-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9호)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·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, 절차,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,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→ 개정사항 안내

① 평가방법 다양화: 3단계판단법, 핵심요인기술법 등

② 평가시기 명확화: 정기평가(매년 평가 적정일을 재검토 후 실시)/상시평가(월 1회 이상 제안전제도/아차사고 확인 등)

③ 근로자 전과정 참여

④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: 전과정 공유, TBM 실시,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

3. 종합의견 위탁업무수행(총괄)(세부업무내용 및 개선의견)

-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안내함

6) 구급함 점검 및 관리지도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,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 또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
→ 구급함 위치: 사무실에 비치 확인했습니다.

→ 필수 구급용구 비치 여부: 부목, 지혈대, 들것 비치 바랍니다.

→ 유통기한 및 청결도 확인: 청결도 양호합니다.

→ 구급용구 관리자 지정 여부: 지정 확인하였습니다.

7) 보건관리위탁업무에 관한 상반기 만족도 조사 실시

방문일자	2023-06-20	안전보건 관리책임자	직위: 공장장 성명: 임경환 (인)	보 건 관 리 자	성명: 정서연 (인)
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